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

개 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기한 휴원 중인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난 해소를 위해 일부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방안 마련

내 용

- ① 지자체의 어린이집 인건비·운영비 긴급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도 실 소요비용 한도 내 중복지원
- ② 보육교사 등이 가족돌봄휴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유급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인 경우에도 인건비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 ③ 사업주 신청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의 인건비와 3분기 중소기업 운영비를 조기 지급

지원대상

-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또는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시설 중 코로나19로 인한 운영난으로 특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사업주단체 포함)

지원기간

- '20년 3월 ~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추후 별도 안내)
※ 코로나19 관련 어린이집 휴원명령 개시일 : '20년 2월 28일

신청기간

- 2020년 5월 20일(수) ~ (종료 기간은 추후 안내)
※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운영비 조기 지급은 6월까지 신청

신청방법

- 관할 소재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특별지원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구분	지자체 긴급지원금 중복지원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	지원금 조기 지급
대상	지자체에서 코로나19관련 인건비 또는 운영비 명목의 긴급지원금을 지원받거나 받으려는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가족돌봄휴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월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미만으로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직장어린이집	사업장 휴업 또는 보육아동 입소 유예·취소 등으로 어린이집 수입이 감소하는 등 운영이 어려워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 받으려는 직장어린이집
지원 내용	인건비 / 중소기업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 / 중소기업 운영비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1인당 월6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120만원) 한도 · 중소기업 운영비 : 월 200만원~520만원 		
비고	지자체 및 고용보험기금 지원금의 총합이 실제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이상인 경우, 실제 지출한 인건비, 운영비 한도로 지원	유급고용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6~8월분(3개월분) · 중소기업 운영비 : 3분기(7~9월분)

지원절차



신청접수 및 안내

센터	주소	관할지역
서울	서울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8 근로복지공단 311호 ☎ 02) 2670-0411~27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255, 5층 ☎ 051) 320-8182~8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대전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 042) 870-9111~7	대전, 세종, 광주, 충남, 충북, 전남, 전북